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리노베이션 확장공사에 따라 대관 사용료 기준 정비 및 명칭 변경 필요
- 나. 현 정부 정책기조인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단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사용료 인상 등 대관료 현실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갤러리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충무갤러리를 갤러리로 변경(안 제15조)
 - 부대시설 중 컨벤션센터 삭제(별표)
- 나. 갤러리 대관 사용료 등 기준 정비(별표)
 - 갤러리 대관기준 세분화 및 대관료 인상(안) 마련
 - 갤러리 3관 대관시 용도(전시 또는 컨벤션)에 따라 대관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문화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정책과, 전화 : 02-3396-4603, 팩스 : 02-3396-8621, 이메일 : sjbeckha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충무갤러리”를 “갤러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 나. 토·일·공휴일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를 할증할 수 있다.
- 다.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 이내,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갤러리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 연	1,500,000	1회 3시간	클 래 식
		리허설	750,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 연	3,000,000	리허설 및 오후공연 포함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5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첼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 연		6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3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첼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공 연		4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첼수		400,000	1회 3시간	
갤러리	1관		600,000	1일	전 시
	2관		250,000	1일	
	3관		500,000	1일	
			300,000	4시간	컨 벤 션

※ 컨벤션 : 기업 회의, 세미나, 소규모 공연 등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기준	비고
피아노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 마 하	40,000		
부대시설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다. 비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p> <p>① (생 략)</p> <p>②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극장 및 <u>충무갤러리</u>는 사용 예정일 60일 전, 이외의 모든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p>	<p>제15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갤러리</u>----- ----- ----- ----- -----</p>

